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25 선고 2019가단55461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,504,385원과 그 중 37,320,340원에 대하여 2019. 10. 26.부터 2020. 4. 1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종업

별지